

南北韓 水産物 交易活性化 方案

朴明燮*

〈목 차〉

I. 서언	IV. 남북한 수산물교역 증대방안
II. 남북한 교역의 형태와 추이	V. 결론
III. 남북한 수산물교역	참고문헌

I. 서언

21세기의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남북한은 경제 통합을 위한 교두보로서 각 산업 분야별 경제협력이 요구되고 있다¹⁾. 이러한 협력분야들 중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 중의 하나로 수산업분야의 남북경제협력을 들 수 있다.

국제적인 경제협력은 대부분 자국의 경제적 실리추구를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된다. 그러나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과거 독일이나 유럽통합의 경우와는 다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데 경제적 요인 외에, 이념, 정치, 군사 및 사회적 측면 등의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은 대단히 복잡하고 불리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으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적 동질성회복이라는 측면과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 외에 많은 장점들을 갖는다.

그러나 남북 경제통합의 단계에서 볼 때 현재는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경제교류기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경제교류는 민간차원의 물자교류에 한정 되어 있으며 그나마 최근에는 위축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교역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의 강구가 극히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교류단계에서 진일보하여 국내외적으로 변화한 환경에 부응하는 산업별 경제협력방안이 요청되고 있다.

*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수산기업연구소 국제수산연구부장

1) Myong-Sop Pak and Tae-Yong Kim, A plan for co-operation in transpor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ransport Reviews, 1996, Vol, 16, No. 3 pp. 225~241.

특히 수산업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즉, 국제적으로는 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산 수입수산물이 국내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으며 어가하락으로 인한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1994년 11월 UN해양법이 발효됨에 따라 어업자원의 이용 및 관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어장축소와 입어료 상승으로 인해 도산업체가 늘고 있다. 또한 유희화된 어업자본이 중국 등의 인접국으로 반출되어 경영악화는 심화되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어업자원의 감소로 어업생산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IMF 관리체제 이후 내수시장이 침체상태에 빠져 있다. 이 외에도 선진 어업기술과 시설이 유희화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러한 수산업계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일반적인 분단국가의 경제통합과정을 수산분야에 적용시켜 보면 크게 ①수산물의 직간접 교역, ②상호어로수역 이용, ③ 수산부문별 합작사업, ④생산요소 자유이동 및 공동어업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①은 경제교류기, ②와 ③은 경제협력기 그리고 ④는 경제통합기에 해당된다.

상호어로수역 이용단계는 기술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상호교류는 없이 특정수역에서의 특정자원을 상호이용하는 것이다. 수산부문별 합작사업 단계는 자원의 이용 뿐만이 아니라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적 협력으로서 쌍방이 비교우위에 있는 생산요소를 합작형태로 투자하여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산부문의 통합단계로서 생산요소의 자유이동 및 수산자원에 대한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을 공동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수산부문의 경제협력 방안들 가운데서 수산물 교역에 초점을 둔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수산업 협력이 구축되어야 다음 단계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5절로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남북한 교역의 형태와 추이를 북한의 무역구조와 특징, 남북한 교역형태 및 남북한 교역현황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3절에서는 북한의 수산업 현황과 남북한 수산물 교역 추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4절에서는 남북한 수산물 무역의 문제점을 평가하면서 남북한 수산물교역의 증대방안을 논한다. 5절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제시한다.

Ⅱ. 남북한 교역의 형태와 추이

1. 북한의 무역구조와 특징

1) 무역규모

1950년대 초반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에 우선적으로 치중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 중국과 소련간에 국경분쟁이 발생하자,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에 우선하면서도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무역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비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확대의 필요성을 느껴, 무역의 다양화와 다각화를 대외무역 발전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선진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설비수입과 유류파동으로 인해 1970년대 후반부터는 수출증대에 매진한다.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북한은 다소 폐쇄적인 입장으로 회귀하다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수출증대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91년말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1992년에는 대외무역의 일원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무역체계를 도입하면서 무역관련 기구들을 개편하였으며, 1993년말에는 무역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수출증대와 외국자본의 도입을 위해 진력하였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출범 이후,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개혁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는 챙기되, 개혁개방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불안정 문제는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²⁾.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은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심한 기복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의 수출입액은 1970년도의 수출입액에 비해 각각 4.8배, 3.9배의 증가를 나타냈으나 전반기 중에 대서방권 외채상환 문제와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인 광산물의 국제시장 가격하락으로 인한 외화수입 감소로 무역의 전반적인 침체현상을 보였다. 1985년 수출액은 1980년 대비 26.6%, 수입액은 4.1% 감소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수출비중이 이 기간 중에 대서방국과의 수출격감으로 나타난 것이며, 그 후 구소련과의 수출증대로 회복세를 가져왔다.

1990년까지 매년 20%의 증가를 보였으나 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경화결제요구에 따라 무역이 급감하였다. 1990년 25.7억 달러로 전체 북한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구소련과의 교역은 양국간 교역이 경화결제로 전환되고 무역협정이 폐기됨에 따라 1991년에는 전년대비 약 1/5 수준에 불과한 4.6억 달러로 줄어 들었다.

1990년은 전년도보다 4% 감소된 47억2천만달러(수출 19억6천만달러, 수입 27억6천만달러)로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91년에 27억2천만달러(수출 10억1천만달러, 수입 17억1천만달러)로 감소하여 1995년의 총 교역규모는 20억5천달러(수출 7억4천만달러, 수입 13억1천만달러)로 무역수지 구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중 북한의 교역규모는 21억8천만달러로 1996년의 19억8천만달러보다 2억달러 늘어났다³⁾.

<표1> 북한의 교역추이

(단위: 억달러)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교역규모	수출	19.6	10.1	10.2	10.2	8.4	7.4	7.3	9.1
	수입	27.6	17.1	16.4	16.2	12.7	13.1	12.5	12.7
	계	47.2	27.2	26.6	26.4	21.1	20.5	19.8	21.8

자료: 한국은행, 『1995년 북한 GDP추정결과』 (1996.6)

2)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1998.12 (<http://ku.kinu.or.kr/balgan/>).

3) 정만식, 남북한 무역구조론, 청목출판사, 1999, pp. 312~313.

1996년 1997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1998.7)

2) 국별 및 상품별 무역동향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1996년 말 현재 중국, 일본, 인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교역은 1995년의 경우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식량 및 원유 등의 원조물자를 대량 지원함으로써 1996년에 1위 교역상대국으로 올라섰다. 북한의 대중국 교역은 1996년 말 현재 수출 6,863만 달러, 수입 4억 9,702만 달러로 총 5억 6,566만 달러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일본과의 교역은 수출 2억 9,141만 달러, 수입 2억 2,699만 달러로 총 5억 1,84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대북한 교역을 합할 경우 북한 전체 교역의 50% 이상에 이르러 북한의 대중, 대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국별 무역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지역별 교역구조도 변화되고 있다. 북한과 구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이 1994년을 기점으로 전체 교역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 이후 1996년에는 34%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북한의 무역 상품별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수입에서는 1970년대에 기계 및 수송장비에 대한 비중이 괄목할만큼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광물성 연료 특히 코크스나 원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위탁가공용 섬유원자재의 수입증가로 각종 재료별 제조공산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수출에서는 각종 재료별 제조 공산품 비중의 지속적인 감소와 기타 제조품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가 가장 특징적이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각종 재료별 제조 공산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까닭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주요 수출원이었던 철강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기타 제조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섬유제품의 임가공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새로운 수출원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⁴⁾

2. 남북한 교역의 거래형태

1) 순수 간접 교역형태

남북한 교역 당사자가 직접거래를 할 수 없었던 초기 상황에서는 각각 제3국 무역업자와 무역계약을 하고, 물품은 남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때로는 물품의 직송조차도 상호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물품이 제3국에서 환적된 후 수송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 때 북한 무역업자는 상호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클레임이 발생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인 제3국 무역업자를 상대로 해결해야 했다.

이 단계에서 북한의 무역업자는 제3국 무역업자와의 계약에서 북한의 반출물품이 절대

4) 임강택, 전계자료.

남한으로 전송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만약 남한에 되팔릴 경우 즉각 교역을 중단한다」, 「판매사실이 남한언론에 보도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와 같은 내용이다⁵⁾.

이러한 남북한간의 간접교역방식의 물자교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수교국간에 이루어지는 일반교역 형태도 아니고, 미수교국간에 이루어지는 협정교역도 아닌 특수한 형태의 교역이다. 즉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는 수교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과 북한간의 민간차원협정에 의한 교역도 아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남북한간의 물자교류가 홍콩 등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수산물의 초기교역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1년 3월 풍양산업(주)은 명란을 보유한 북한산 명태 2,150톤을 일정량씩 상자에 포장한 상태로 반입하기로 홍콩의 중계무역업자 코카상사와 계약하였으나 코카상사가 이를 북한측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명란이 없는 명태가 도착하였다. 계약가격은 톤당 280달러로 총 60만 2천 달러였다. 따라서 풍양산업은 반입된 명태를 상품화하지 못하고 어묵 가공공장등에 헐값으로 처분함으로써 약 3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다. 풍양산업은 홍콩의 코카 상사를 북한에 손해배상을 요청하였는데 북한은 처음으로 이에 응하여 1991년 8월12일 명태 700톤을 현물배상 형식으로 보내왔다. 이는 간접교역에서 최초로 클레임이 원만하게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였다.⁶⁾

제3국의 중개상은 홍콩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국의 부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반입 중개지로서 홍콩의 비중이 1993년 75%, 1994년 66.7%, 1995년 22.8%, 1996년에는 41.8%로 저하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1994년 12.8%, 1995년 22.8%, 1996년 36.9%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출 중개지로서 중국의 비중이 10%이나 홍콩은 64.9%를 차지한 1995년을 제외하고는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⁷⁾.

2) 형식적 간접교역 형태

1989년 상반기 경부터는 외국에 진출한 남한기업들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지사 명의로 북한의 무역업자와 직접 상담을 하고 무역계약은 제3국 중개업자를 개입시키는 형식적 간접교역의 형태를 취하였다. 이런 거래형태는 비록 현지법인의 명이라고는 하지만 직접 북한의 무역업자와 거래상담을 하였다는 점에서 순수한 간접교역 보다는 진일보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 역시 법적으로 제3국 무역업자가 계약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간접교역과 동일하다. 다만 클레임 발생시에 상담 당사자였던 북한의 무역업자와 간접적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다⁸⁾.

5) 중앙경제신문, 1991.4.11일자.

6) 동아일보 1991.7.11 및 8.28일자.

7) 배중열, 남북경제교류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수은조사월보, 1997.8, 한국수출입은행, p. 10.

8) 강용찬, 남북한 교역과 거래형태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7권, 한국국제상학회, 1992, pp. 17~18.

하지만 양측간의 물자교류가 당사자간의 직접계약이 아니고 중개상사를 통하여 간접교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개상사를 통한 간접적 클레임 처리는 그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거래당사자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만한 처리가 어렵다.⁹⁾

이러한 유형의 남북한 수산물 교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 1월 삼성물산의 프랑스 현지법인인 삼성 프랑스는 북한 수산공사의 에이전트인 IFA푸드사와 접촉하고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품목은 북한산 냉동명태, 결제조건은 프랑스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 방식, 수입가격은 톤당 233 달러 (국내 명태가격의 30% 수준, 북양산 냉동명태의 60% 수준으로서 현저히 싼 가격이었음), 수송방법은 제3국 선박을 이용하여 원산항에서 선적하고 군사분계선을 바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해로 나갔다가 다시 남한 영해로 들어와 부산항에 입항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이 거래에서 남한과의 거래라는 것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신용장 개설시 2~3개 은행에서 금액을 분할해서 개설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삼성물산과 삼성프랑스사와의 거래는 본지사간의 거래로 정산하였다. 국내에 반입된 냉동명태는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인수하여 시판하였다. 수협은 구입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은 동해안 어민들에 대한 지원비로 사용하였다.¹⁰⁾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간접교역의 특성상 교역의 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금결제상의 어려움은 직교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또한 대금결제체제와 같은 남북한간의 금융제도적 장치의 미비는 남북한간에 직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간접교역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낳게 된다.

3) 직접교역 형태

1992년 2월 남북한 기본합의서 발표 이후 국내기업이 북한의 기업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물물교환 형식의 구상무역과 제3국은행을 통하여 대금결제를 하는 직교역도 늘어나고 있다.

남북한 물자교류가 직교역 방식으로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91년 7월 남한의 천지무역상사와 북한의 금강산 국제무역개발회사간의 쌀과 무연탄 및 시멘트의 물물교환이었다. 이들 회사는 1990년 3월 남한 쌀 10만톤과 이에 해당하는 북한의 무연탄, 시멘트 등 1,436만 달러의 물자를 물물교환하는 직교역에 합의하고 우선 1차분으로 남한 쌀 5천톤과 북한 무연탄 3만톤, 시멘트 1만1천톤을 1991년에 교환하기로 하였다.

남한 쌀 5천톤은 제3국 선박에 선적되어 7월27일 목포항을 출발하여 29일 나진항에 도착하였다. 북한으로 반출된 남한 통일쌀의 반출가격은 40kg 기준 9,800원으로서 시중 시세 22,300원 보다 아주 저렴하였다. 이 남한 쌀 반출포장지에는 북한측의 요청으로 원산지과 반출회사명이 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시멘트와 무연탄은 수송되지 않음으로써 계약이 미이행상태로 종결되었다. 이에 천지무역상사는 1992년 10월 23일 대북한교

9) 신현중, 남북한 경제교류확대 방안, 영남대 사회과학 연구소, 1992, p.31.

10) 조선일보, 1989, 1.7일자.

역에 대한 손실로 인정받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손실추정액 12억 6천만원을 지급받았다.

비록 이 계약은 남한측이 북한측에 대해 쌀 5천톤을 무상공여한 셈이 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남북한 기업간 직접계약과 직접수송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북한이 남한과의 물자교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¹¹⁾.

직교역¹²⁾은 1991년 5건, 1992년 13건에 329만 달러, 1993년 14건에 345만 달러로 계속 증가하였다. 1994년은 22건에 1,037만 달러로 전체 남북교역의 4.5%를 차지하여 전년의 345만 달러, 1.7%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1996년은 남북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직교역의 비중은 8.6% (반입 9.9%, 반출 4.7%)인 2,095만 달러에 불과하였다¹³⁾.

남북한간의 교역은 주로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직교역 비중이 10% 미만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경제의 대남의존도 증대, 북한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북한의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한 상품의 원산지 확인 등의 진위여부의 확인문제 등으로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4)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교역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초기단계에서 실용적인 방안으로 남한 기업이 생산 설비, 원자재 및 가공비 등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지급하여 북한이 생산을 하고 다시 완제품을 반입하는 경제협력 형태이다. 남북한간의 위탁가공교역은 반출입거래와 유사하게 제3국의 중개상 또는 현지법인을 통한 간접 위탁가공교역이다.

위탁가공교역은 남북한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장을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북한은 남한과의 위탁가공교역 과정에서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 획득과 기술습득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은 생산과정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남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남한에게 위탁가공은 직접투자에 비해 위험이 작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산시설, 기술 및 기업운영체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위탁가공교역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추진될 본격적인 경협사업인 대북투자의 전단계로서의 기능을 가진다.¹⁴⁾

남북경협의 장기적 관점에서 위탁가공은 현재 주로 상품교역에 한정되어 있는 남북한간의 경제관계를 경제협력의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중간단계의 역할을 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11) 또한 FAO의 잉여농산물 처리원칙인 「쌀을 1천톤 이상 수출 또는 무상공여할 경우 수출 이해 당사국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러싼 국제적 마찰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국간 거래」를 강조하는데 남북한이 거래과정에서 협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2) 계약서의 서명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직교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래는 많지 않다.

13) 정만식, 전게서, p. 262.

14) 최수영, 남북한 교역관계 : 지난 10년의 평가와 향후전망, 남북 교역 10주년 세미나, 1998, p.7.

위탁가공은 의류봉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던 조총련계 기업들과의 교역에서 처음 이루어진 이후 점차 서유럽 및 홍콩기업들 그리고 남한 기업들에게로 확대되었다. 1991년 코오롱 상사가 가방 위탁가공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남북한 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으로 신장해 왔다. 남북한의 위탁가공교역은 1991년에 3만6천 달러 (0.02%) 규모의 학생가방의 반입을 시작으로 1992년 82만9천 달러, 1994년 2,566만3천 달러, 1996년 7,440만2천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교역의 29.5%를 차지하였으나 1997년에는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25.6%로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1998년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위탁가공교역의 비중은 32.0%(반입 44.8%, 반출 22.8%)로 높아졌다 (표 2 참조). 이와같이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이 증가해 온 이유는 임금상승 요인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섬유, 봉제, 신발부문의 생산기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남한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외화획득 및 기술습득을 도모하려는 북한의 필요성이 서로 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위탁가공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

년 도	반 입			반 출			계		
	금 액	위탁가공	비 율	금 액	위탁가공	비 율	금 액	위탁가공	비 율
1992	162,863	638	0.4	10,563	200	1.9	173,426	839	0.5
1993	178,167	2,985	1.7	8,425	4,023	47.8	186,592	7,008	3.8
1994	176,298	14,321	8.1	18,249	11,343	62.2	194,547	25,663	13.2
1995	222,855	21,174	9.5	64,436	24,718	38.4	287,291	45,892	16.0
1996	182,400	36,238	19.9	69,639	38,164	54.8	252,039	74,402	29.5
1997	193,069	42,894	22.2	115,270	36,175	31.4	308,339	79,069	25.6
1998	92,624	41,371	44.8	129,679	29,617	22.8	221,943	70,988	32.0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90호(1998.12.1~12.31), p. 42.

하지만 위탁가공과 관련하여 운송비 과다, 기술지도 및 품질검사의 애로 등 교역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산업 부문에서는 〈표3〉과 같이 미홍식품이 수산물 채취·가공에 15만달러, 파라우수산이 수산물 생산가공에 대해 30만달러의 투자를, 태영수산과 LG상사 가리비 생산을 목표로 200만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수산부문의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득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승인만 받았을 뿐 구체적인 사업실적이 없는 실정이다.¹⁵⁾

15) 김현용, 남북 수산물 교역증대 방안, 수협통계 조사월보 제30권 제12호, 1998년 12월, p.79

〈표 3〉 수산부문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승인업체	사업내용	투자규모	투자방식	복측상대방	투자지역	승인일자
미홍식품	수산물채취, 가공 (전복, 실뱅장어), 판매 평양에 '칠홍합영 수산회사' 설립	15만달러	합영	조선철산 주식회사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997.5.23 1998.3.13
파라우수산	수산물생산가공	300만달러	-	조선은파산 무역상사	원산, 해주	1997.8.1
태영수산/ LG상사	가리비(뱀조개)생산	200만달러	합영	광명성 총회사	원산 또는 나진, 선봉	1997.10.14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제공자료

3. 남북한 교역 현황

해방 이후 1949년 4월까지 남북한의 교류는 「38밀무역」과 「군정무역」의 형태로 물자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일체의 경제교류가 중단되어 40여년간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78년 말 영국의 한 상사가 중계무역 형태로 석탄 1만톤을 남북한 양측의 양해하에 남포항에서 부산에 직수출한 적이 있다. 그 후 남한은 1988년 7월 7일 대통령 특별선언과 후속조치 [남북물자교류 지침(1988.10.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 및 시행령(1990.8.9), 시행규칙(1991.3.27) 등]을 통하여 남북한간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 7일과 12월 15일에는 민간기업의 북한물자교역과 남북한 경제인의 상호교류를 허용하였다.

1988년 이후 남북물자교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은 남북한간의 정치적 상황과 북한 핵문제 등 비경제적 요인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왔으나, 외형상의 큰 성장과 함께 내용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북교역¹⁶⁾은 연간 반출입 승인실적이 95년부터 2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1999년 남북교역액은 333,437 천달러로 전년도의 221,943 천달러에 비해 50.2% 증가하였다. 또한 남북교역이 가장 많았던 1997년 308,339 천달러에 비해서도 8.1% 증가하였다. 반입은 121,604 천달러로 전년의 92,264 천달러에 비해 31.8% 증가했고, 반출은 211,832 천달러로 전년의 129,629 천달러에 비해 63.4% 증가했다.¹⁷⁾

1999년의 남북교역이 전년 대비 50.2% 증가한 것은 위탁가공 교역의 확대와 농림수산물 등 북한산 물품반입이 증가하는 등 IMF 경제상황에서 급감하였던 거래성 교역이 국내경기

16) 남북교역대상 물품의 분류는 HS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17) <http://www.unikorea.go.kr>, 2000년 2월 23일

회복에 따라 크게 늘어났으며 또한 비료 등 대북지원 증가와 금강산 관광산업 등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물자의 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입이 시작되던 초기에는 철강금속이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고, 섬유류는 반입실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92년부터 철강 금속의 반입이 47.9%에서 1997년에는 23.2%로 점차 감소한 반면, 섬유류는 1992년의 2.0%에서 1997년에는 43.3%로 급속히 증대되었다. 철강금속과 함께 강세를 보이던 광산물도 1997년 이후에는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간의 위탁가공사업이 전체 교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주요 교역분야로서 확고한 지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9년도의 교역품목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반입품목은 ①농림수산물 ②섬유류 ③철강금속제품이며, 농림수산물과 섬유류의 반입은 전년 대비 각각 119.6%, 17.3% 증가한 반면 철강금속제품의 반입은 20.4% 감소하였다. 그리고 주요 반출품목은 ①비금속광물제품 ②화학공업제품 ③섬유류 ④기계류 및 운반용 기계 ⑤철강금속제품이며, 비금속광물제품, 화학공업제품 및 철강금속제품이 각각 135.4%, 744.7%, 78.9%로 크게 늘어난 반면 섬유류는 27.1%의 증가에 그쳤다.

〈표 4〉 연도별 남북교역현황

(금액 : 천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 액	건수	품목수	금액
'89	66	25	18,655	1	1	69	67	26	18,724
'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91	300	44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1	186,592
'94	827	73	176,298	267	92	18,249	975	165	194,547
'95	976	105	222,855	1,668	174	64,436	2,644	279	287,291
'96	1,475	122	182,400	1,908	171	69,639	3,383	293	252,039
'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414	308,339
'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810	486	221,943
총계	8,924		1,344,569	11,414		423,064	20,338		1,767,633

주 : '95년 교역실적에는 대북 쌀지원 237,213천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자료 : 통일부(교류협력국), 남북교역 실무안내, 1999.

Ⅲ. 남북한 수산물교역

1. 북한의 수산업 현황

북한의 수산부문은 동해와 서해의 바다를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부문이다. 그러나 장비의 부족 등으로 어업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최근 양식어업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특히 최근 전체적인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에 천해양식 등 “기르는 어업”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식량 공급원과 외화획득의 확보를 수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정책목표로 원양 및 양식어업의 발전 그리고 수산물 가공사업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어업 생산기반을 어선·어항·어구·어업기자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어선 보유척수는 1998년 현재 약 3만 600척 정도이며, 이중 동력선은 전체의 64%인 2만 3천여 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북한의 수산물 생산현황을 살펴보면, 동해와 서해의 비중이 각각 70%와 30%로서 동해에 편중되어있다. 이는 동해가 어류자원이 풍부한 데다 계절에 따른 일시다획성 어족이 많아 트롤이나 기선저인망 등의 대규모 어업이 가능한 반면에, 서해는 어종이 다양하기는 하나 자원량이 빈약하고 수심이 얕으며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소규모의 안강망 어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해양어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진한 반면에 양식어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해남도 부포·웅진·몽금포·구미포 등 18개 지역에 천해양식사업소를 설치하여 100여개의 천해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해에도 천해양식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식품종은 주로 굴·미역·다시마·김·우뭇가사리·대합 등이며, 특히 미역(나진), 굴(문천)등이 대표적인 양식품종이라고 한다.

남북한간 수산물의 생산실적을 보면, 북한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1년 대비 거의 반으로 줄었음에 비하여 남한의 생산실적은 1991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수산업 생산구조는 원양어업의 비중이 2% 미만, 연근해어업이 50%, 양식이 48%를 접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남한은 전체 수산업 생산에서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 및 양식어업의 비중이 각각 약 51%, 23% 및 26%라고 하는 구조적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면 어업과 양식업은 오히려 북한이 남한에 비해 약 20~50% 가까이 높다.¹⁹⁾

18) 황의각, 「남북한 통일이후의 산업구조조정」, 대한상공회의소, 1998

19) 부경대학교, 해양수산분야 남북협력방안, '98 제4차 수산과학 심포지엄, p.20.

〈표 5〉 남북한간 수산물 생산량 비교

(단위: 만 톤)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수산물	329	114	298	120	334	109	348	100	335	105	324	88	324	65

출처: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 충남대학교 출판부, 1999, p.213

2) 북한 수산물의 반입 현황

북한 수산물은 단계적으로 반입이 자유화되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반입을 할 수 있다.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해, 반입제한승인품목²⁰⁾은 총 182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그 이외에는 포괄승인품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북한수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입여부 및 물량을 승인하는 반입제한승인품목과 포괄승인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반입제한승인품목은 미꾸라지(활어), 홍어(냉동), 꽃게 냉동에 한함,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에 한함, 가리비(냉동) 및 오징어(냉동) 등 7개 품목이 포함되고, 그 이외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승인을 요하지 않는 포괄승인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²¹⁾

〈표 6〉 북한수산물의 반입제한승인품목

연 번	품 목 번 호	품 목
20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21	0303-79-9093	홍어(냉동)
22	0306-14-9000	꽃게(냉동)에 한함
23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24	0306-24-1000	꽃게(산 것, 신선 또는 냉장)에 한함
25	0307-29-1000	가리비(냉동)
26	0307-49-1020	오징어(냉동)

자료: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한간의 수산물 교역은 1984년 8월 남북경제회담이 개최된 이래 제3국을 통한 간접교

20) 반입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서 별표 1에 기재한 물품 (별표1 : 개정 1999.8.16 통일부 고시 제99-2호).

21) 반입제한승인품목의 반입승인 심사기준은 당해 물품의 과다공급에 따른 국내시장의 교란가능성, 국내 생산자 보호측면, 반입가격의 적절성, 남북교역의 확대·발전 가능성 및 기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역이 이미 부분적으로 행해져 왔고, 1988년 7·7 선언 후인 그 해 11월에 현대중합상사가 북한의 원산지 표시가 된 상품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산 모시조개 40kg을 직접교역한 형태로 반입한 바 있으며, 1990년대부터 정부의 품목별 반입승인제도하에서 주로 냉동명태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직교역이 급격히 성장하였다.²²⁾

북한 수산물의 반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4년에 272만 3천 달러, 1995년에 269만 2천 달러, 1996년 910만 1천 달러 그리고 1997년에는 1,457만 2천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60.1% 증가하였다. 그러나 IMF 여파로 1988년에는 4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57.9%나 감소하였다. 한편 전체 반입실적 대비 수산물의 반입비중을 보면 1994년에 1.54%에서 1997년에는 7.54%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 북한상품의 반입실적 추이

단위: 천달러, %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¹⁾
수산물	반입실적(A)	2,723	2,692	9,101	14,572	4,042
	증가율	210.14	-1.14	238.1	60.1	-57.9
전품목	반입실적(B)	176,298	222,855	182,399	193,069	52,313
	증가율	-1.04	26.4	-18.15	5.84	-60.7
비율(A/B)		1.54	1.20	5.0	7.54	7.7

자료: 박성쾌·심기섭, 북한수산물 반입 및 유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주: 1998년 8월말 기준임.

한편 어종별 반입실적을 보면, 반입물량면에서는 냉동명태가 2,583톤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냉동문어 및 백합이 각각 2,366톤, 1,578톤을 기록하고 있다. 금액면에서는 냉동문어가 628만 1천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냉동복어가 206만 4천 달러, 대합이 152만 7천 달러 그리고 냉동명태가 112만 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어 이들 4개 품목이 북한 수산물의 반입을 주도하고 있다.

1997년의 북한 수산물 반입액은 약 1,457만 달러인데 이것은 남한측으로서는 수산물 총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되는 미미한 것이지만, 북한으로서는 수산물 총수출액의 약 15%를 점하는 큰 비중이다.²³⁾ 따라서 북한 수산물의 대남 반출은 북한의 총수출 증대와 외화획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2) 이병기·박영호·최종화, 북한수산업의 산업적 기반 및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3.12, p.102.

23) 부경대학교, 전게서, p.51.

〈표 8〉 주요 어종별 반입실적 추이

단위: 톤, 천달러

구 분	1994		1995		1996		199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냉동)복어	-	-	133	610	593	3,132	328	2,064
(냉동)명태	2,015	615	-	-	25	35	2,583	1,120
생백합	114	36	385	432	476	519	1,578	1,527
(냉동)꽃게	144	374	21	25	38	283	49	208
(냉동)우렁이	11	20	34	33	49	244	143	1,015
(냉동)문어	27	76	345	812	1,150	2,945	2,366	6,281

자료: 〈표7〉과 같음

한편 남북한간의 수산물 교역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산 수산물을 반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물론 북한으로 반출된 수산물은 물량면에서 1994년에 100톤, 1995년 36톤, 1996년에 205톤 그리고 1997년에는 73톤을 기록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994년에 9만 7천 달러에서 1997년에는 26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산물의 반출은 북한에서 반입된 것 중에서 품질불량으로 인해 반품된 것이 대부분이다. 즉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수산물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수산물 교역은 반입위주의 일방적인 교역에 불과하다.²⁴⁾ 즉 수산물을 통한 외화벌이라는 정책기조를 가진 북한으로서는 남한 수산물을 반입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표 9〉 수산물의 반출 실적 추이

단위: 톤, 천달러

구 분	1989~1993	1994	1995	1996	1997	1998.1~8
물 량	1,126(천속)	100	36	205	73	41
금 액	6	97	155	142	260	94
품목수	1	1	5	2	9	6

자료 : 〈표7〉과 같음

IV. 남북한 수산물교역 증대방안

1. 수산물의 직교역화

지난 1998년 4월 30일에 “남북한 경제협력활성화조치”가 발표되었다. 이 조치가 비록 남한의 일방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도 남북한

24) 박성쾌·심기섭, 북한수산물 반입 및 유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pp.15-18.

간의 직접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북한 내부의 경제협력의 구조와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²⁵⁾

현재 북한 수산물의 반입은 거의 간접교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3국 중개인을 통하는 방법은 위험의 분산이나 의사교환의 편리성 등에서 유리한 면이 있기는 하나 중개수수료의 부담이 원가상승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역과 관련한 상담·협약이 북한측 사업상대방과 직접 이루어지기 보다는 북한의 대남창구나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교환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간접교역에 따르는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남북한 수산물 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오랜 시간과 양 정부의 단호한 결단을 요한다. 직교역을 위해서는 남북간 무역협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남북간에 대표성과 상호 책임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양측의 민간기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²⁶⁾ 그러한 기구로서는 대외무역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으로 대성총국과 그 산하에서 농수산물 무역을 담당하는 기관인 「조선대성무역상사」, 「조선대성제3무역상사」, 「조선수산물무역상사」 등을 들 수 있다. 남한의 대표적 민간기구로서는 생산자 단체인 수협중앙회를 들 수 있으나, 생산자 단체인 만큼 종합상사도 참여시켜 직교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물품확인 및 품질검사를 위한 북한방문

수산물 교역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품질관리와 제품의 규격화 문제 등으로 북한은 냉동시설 부족, 조업여건 불비 등으로 인해 수산물의 선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상품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품질규격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산물 교역시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명확한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며, 중개인등을 통해 세밀한 품질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역물품 확인이나 품질검사를 위한 북한방문은 현재는 북한측이 이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역물품의 현지확인 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비교적 북한왕래가 자유로운 제3국인을 방북시키거나, 중국으로 보세운송하여 검사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이든지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따른다.

궁극적으로는 구매당사자에 의한 물품확인이 가능하게 되어야 할 것이므로 업체가 북한측에 현지확인을 위한 방북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하여야 하며, 북한 당국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

25) 윤기관, 남북한 무역경제, 충남대학교 출판부, 1999, p.377.

26) 김현용, 전개논문, 1998. 12, p.82

3. 교역물품 운송비 인하

현재 남북한간에는 인천→남포, 부산→나진간에 월3회 간격으로 선박이 정기운항되고 있어 대부분의 교역물품은 이 항로를 이용하여 운송되고 있으며, 그외 항구는 임차선박의 투입이 가능하며 주로 수산물·농임산물·광산물 등을 운송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있다. 북한 수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업체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제3국의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해상운임은 선적 물량의 톤수에 의한 운임율이 아니라 선박의 용선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정기용선으로 계약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체로 운임부담력이 낮은 수산물의 경우 운임이 낮아야 교역이 활성화 될 것은 자명하다. 적정운임의 국적선사를 투입하여 외화절약과 함께 수산물 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간 교역제품의 물류유통체제의 미비로 발생하는 비용²⁷⁾은 ①낮은 소석유로 인한 높은 해상운임, ②선박의 부정기운항으로 인한 납기 차질, ③높은 항비와 장기체선, ④직항체제의 미비로 인한 인력 및 간접비용의 증대 등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물류유통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해운회사에 대한 해상운임 보조 등 직접금융지원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남북한간 합영회사의 설립을 유도하고 그 합영회사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4. 통관절차의 간소화

교역물품의 세관통관을 위해서는 북한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물품검사증, B/L 등 일반적인 상업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반입되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 외에 북한의 국경세관에서 발행하는 국경통과증명서, 제3국에서 발행한 보세운송증명서 및 보세구역장치확인서 등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하며 운송선박이 제3국의 둘 이상 항구를 경유한 경우에는 선장의 항해일지가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통관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운영면에서도 비효율적인 것이 많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대금결제방법의 개선

남북한 은행간에는 환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물품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물품대금의 지급방법은 ① 중개인을 통한 간접결제 ② 북한상사의 제3국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 ③ 등가의 물품으로 결제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①의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②③의 방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무역의 기본은

27) 석유류 위탁가공의 경우 생산원가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품의 운송과 대금결제인바, L/C나 D/A와 D/P 방식의 대금결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결코 남북한 수산물교역은 확대되기가 힘들다. 또한 청산결제 및 제품환매방식의 도입²⁸⁾ 등 효율적인 대금결제 방식도 구축해야 한다.

6. 클레임 해결방안의 마련

남북교역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북한측과 협의하여 대응물품의 일부로 손실을 상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활용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실적으로 명확한 클레임 해결방법이 없으므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여나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북한과의 계약 체결시 클레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사전 협의하여 명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북한물품의 원산지확인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교역물품의 제조·생산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어느 국가를 원산지로 보아야 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만 한다²⁹⁾.

7. 반입제한승인품목의 축소

정부는 최근들어 개정된 「대외무역법」과 남북한교역 여건 변화에 따라 1997년 4월 남북한 교역 대상물품의 품목구분을 '포괄승인품목'과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자동승인품목(포괄승인품목)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관장해 오던 반출·반입·승인제도를 폐지하고, 또한 전략물자 반출입 절차를 신설하는 등 기존의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

현재 북한 수산물 중 7개 품목이 반입규제를 받고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 수산물의 반입제한승인품목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경제주체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반입품목과 반입량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반입제한승인품목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어종에 대해 반입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남북한간의 거래가 무관세임을 악용한 제3국산의 위장반입에 의한 국내시장의 교란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긴급반입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점차적으로 포괄승인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³⁰⁾.

28) 제품환매의 의의와 제품환매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세요. 박명섭, 「국제제품환매계약에 관한 소고」, 중재 제272호, 대한상사중재원.

29) 통일부(교류협력국), 전제자료, pp. 13~15.

30) 박성쾌·심기섭, 전제서, pp. 33~34.

V. 결론

남북한의 반출입은 명분상으로는 지역간 교역(regional trade)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간 교역(international trade)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교역이라고는 하지만 남북한간의 반출입은 수교국가간의 일반형태도 아니며, 그렇다고 비수교 국가간의 협정무역도 아닌 특수한 형태의 교역이다. 즉, 남북한간의 반출입은 비수교국가간의 무역으로 분류되면서도, 또한 민간차원의 협정도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교역형태이다.

남북교역은 어려운 추진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 동안 중단없이 진행되었으며, 남북간 신뢰회복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남북경협 활성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남북경협의 주체인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남북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남북교역은 지난 '88년 시작되어 12년이 경과하였으나 체계화·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북한이 남북교역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당국간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점등이 남북교역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남북한교역의 목적이 거시적으로 보아 민족통일과 경제공동체에 있다고 상정할 때, 결코 순수무역이론에 근거해서 양측의 분업이나 특화 및 무역이익의 귀속이 어떻다든지, 혹은 정책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어떻다는 논리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또한 북한을 현실적으로 대등한 실체로 상대해야 되는 여건하에서 그들이 고수하는 사회주의의 체제논리나 사회주의 무역이론을 도외시하면서 교류, 협력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본고는 남북한 수산협력 방안 중에서도 수산물 교역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수산물은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나 최근 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다. 수산물의 경우도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과 포괄승인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반입제한은 꾸준히 완화되고 있다. 반입승인을 요하는 수산물은 통일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7개품목과 수출입공고등에서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7개품목은 생산여민보호 등을 위해 북한산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교역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품목이며, 수출입공고등에 제한을 두고있는 품목은 제한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반입승인이 가능한 품목이다.

남북한 수산물 직교역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교역협정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민간상사차원의 직교역 추진과 민간주도의 접촉 및 협상창구 설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남북한 교류방안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앞에서 논의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물품확인 및 품질검사를 위한 북한방문, 교역물품 운송비 인하, 통관절차의 간소화, 대금결제 방법의 개선, 클레임 해

결방안의 마련, 반입제한승인품목의 축소 및 북한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제도의 개선 등이 그것들이다.

남북한간에는 교역협정, 원산지확인, 대금결제, 상사중재 등 교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간 대화채널이 중단된 상황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일부 악덕업체가 원산지위장반입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선의의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남북교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남북교역이 순수한 경제적 논리보다는 남북한간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전한 교역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국신·이유진,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2.
- 김도경, 남북교역활성화과제 : 민간부문의 역할제고 방안, 남북교역 10주년 세미나, 1998. 11.
- 김명기, 해양법질서와 남북관계, 해양정책연구 제2권 1호.
- 김정봉, “북한 수산업의 실태와 남북수산협력방안”, 농촌경제, 제16권, 제4호, 1993. 12.
- 김창권, 전환기의 남북한 경제협력,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 김현룡, 남북 수산물 교역현황과 교역증대 방안, 수협통계 조사월보 제30권 제12호, 수협 중앙회, 1998.12.
- 대한상공회의소, 「남북한 통일 이후의 산업구조조정 : 북한 경제구조를 중심으로」, 1998.
- 동용승, “남북경협외 환경변화와 활성화 방안”, 통일경제연구, 1998.
- 박명섭, 유럽공동어업정책에 관한 소고, 수산경영논집, Vol.23, No.2, 1992.
- , 국제제품환매계약, 중재 제272호, 대한상사중재원, 1994.
- 박성쾌·심기섭, 북한수산물 반입 및 유통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 박성쾌·장창익, “남북한 수산협력 증대방안”, 「해양21세기」, 나남출판, 1998.
- 박유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수은조사월보, 1985년 5월호
- 박진, “IMF시대의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과 대응방안” 「통일경제」, 1998년 2월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 배종렬, “남북경제교류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수은조사월보, 1997년 8월호.
- , 남북교역활성화과제 : 제도적 장치 구축방안, 남북 교역 10주년 세미나, 1998. 11.
- , “〈政經分離〉政策方向下에서 남북한간 경협 확대방안”, 수은조사월보, 1998년 5월호
- 양범직, “남북료류협력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통일경제」, 1998년 3월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 유동운, 북방 각국의 대외 어업협력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 수산연구, 제 6호, 1992.

- 윤기관, 남북한무역경제, 충남대학교 출판부, 1999
- 이병기, 남북한 공동어로 수역-모델 설정과 운용방안, 국토통일원, 1990.
- 이병기·박영호·최종화, 「북한수산업의 산업적 기반 및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3. 12.
- 이상만,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현방안, 한국경제학회 국제경제학자 대회 발표논문, 1992.
- , WTO체제하의 남북한 경제교류, 정책자료 95-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 정만식, 남북한무역구조론, 청목출판사, 1999
- 제성호, 대북투자보호 및 분쟁해결방안 연구, 민족통일 연구원, 1993.
- 최수영, 남북한 교역관계 : 지난 10년의 평가와 향후전망, 남북 교역 10주년 세미나, 1998. 11.
- 최정윤, 해양수산분야, 남북협력방안, 부경대학교, '98 해양수산 통일정책 심포지움, 1998. 12'.
- 통일부, 「1997년도 남북교류협력 종합평가」, 1998.
- ,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 , 주간 「북한동향」, 각호.
- , 「남북교역 실무안내」, 1998.
- 통일원, 「남북교역추진현황 : 1988~1996」 . . .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의 무역정책과 무역구조, 주간해외투자정보, 1992 외 다수.
- 한홍렬, 「GATT 최혜국대우 원칙과 남북한 물자교류」, 정책자료 93-02,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993
- 佐竹五六, 國際化への政策的對應, 漁業經濟研究, 第35卷, 第 2. 3合併號.
- 長谷川彰 外 2人, 新海洋時代の漁業, 農山漁村文化協會, 1988.
- EC commission, The common fisheries policy, 1991.
- ,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on the common organization of the market in fisheries products, 1992.
- M. J. Valenica, Sea of Japan: Transnational marine resource issues and possible cooperative responses, Marine Policy, Nov. 1990.
- Myong-Sop Pak and Tae-Yong Kim, A plan for co-operation in transpor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ransport Reviews, 1996, Vol. 16, No. 3 pp. 225~241.